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대해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출입 가능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가. 적용 대상의 명확화 필요

- 개정안 제33조는 공항운영자등¹⁾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자체 보안계획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안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33조제1항**은 공항운영자등에 대한 항공보안 점검 대상인 “보안대책, 통제절차” 등의 대상 용어가 다소 불분명하고 관련 근거 조문이 구체적으로 인용되지 않아 규율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함과 동시에 각 호의 형태로 보다 간결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33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보안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인지”의 대상과 의미가 모호하므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각 호로 나누어 보다 간결하게 규정함.

1)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제9조(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안 제33조제9항에서는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만을 국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점검·조사” 업무 근거인 개정안 제1항 및 제2항의 신설 규정과 관계된 세부 사항도 국토부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수정의견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제시함(아래 수정의견 참조).²⁾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자체 보안계획 이행여부, 보안 대책 및 통제절차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 ----- -----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2) 한편, 개정안의 조문대비표 중 안 제33조제9항을 의미하는 “⑨”로 표기된 부분은 같은 조 제10항을 오기한 것이므로 “⑨”를 “⑩”으로 함께 수정하였음.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법방해행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었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⑨ 제3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운영 및 점검·

3. 제17조의2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

조사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 ----- -.
--	--

나. 벌칙 구성요건이 임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게 유의할 필요

- 개정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와 제50조제4항제2호는 각각 현행법 제14조제4항³⁾과 제15조⁴⁾를 위반하여 보안점검이나 보안검색을 실시

3)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항공운송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항공보안법」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은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협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항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32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성명, 국적 및 여권번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3항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업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5, 2014.1.1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된 경우
3.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3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다시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보안검색에 실패한 경우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⁵⁾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개정안 제50조제5항제2호는 각각 현행법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승객이 아닌 사람 등이나 통과·환승 승객 등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⁷⁾

5)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위해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6) 「항공보안법」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공항 건설이나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물터미널 내에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은 화물터미널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항공보안법」 제17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면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으로 하여금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항공기에서 내린 통과 승객, 환승 승객,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에 드는 비용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나 환승 승객에 대한 운송정보를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송정보 제공에 대하여는 제15조제5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개정안이 규정하는 “야기”의 사전(辭典)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킨다는 표현이므로,⁸⁾ 해당 보안업무 담당자가 적극적인 공조 또는 방조 행위 등을 통해 항공기 납치, 인질 삼기 등의 불법방해행위를 의욕하거나 일으킨 행위만을 처벌한다는 의미인지,⁹⁾ 혹은 불성실한 실시로 단순히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까지 처벌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야기”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처벌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법 집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 중 벌칙 관련 규정>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① ~ ③ (생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u> <u>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u> <u>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u> <u>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u> <u>기한 사람</u>

8)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온라인)에 따른 정의임.

9)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공동정범, 종범(방조범) 등에 해당할 것임.

2. 제15조를 위반하여 <u>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u> 3.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u>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u> 3. (생략) ⑥ ~ ⑨ (생략)	2. -----<u>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⑤ ----- ----- -----. 1. (현행과 같음) 2. ----- ----<u>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u> 3. (현행과 같음) ⑥ ~ ⑨ (현행과 같음)
--	---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